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있어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체등에 대한 등록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자상거래업체등에 대한 등록절차 등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격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가격신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격신고 일괄 신고 요건 완화 및 가격신고 제출 과세자료 명확화(안 제15조)

- 1)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에서 같은 물품을 삭제하여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

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함.

2)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개선(안 제31조)

1) 물품의 거래조건과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을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함.

다. 관세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136조)

1)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추가함.

2)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승선자 신고사항에 선박용품 운송차량번호 추가(안 제163조)

선박용품등의 하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승선 또는 탑승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운송차량번호를 포함함.

마.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기산일 조정(안 제236조의6)

세관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 조정함.

바. 물품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근거 등 마련(안 제251조의2 신설)

물품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전문인력 및 마약탐지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 특별통관 규정 정비(안 제258조)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규정함.

2) 「관세법」에 전자상거래업체등이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갱신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

3)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 제공 가능 시점을 운송장 번호 생성시점부터에서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로 확대함.

아.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 조정(안 제261조)

우편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을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자.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 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추가함.

차. 공인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과태료 경감 폐지(안 별표 5)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사유에서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를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물품을”을 “판매자와 구매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다. 법 제30조제2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대한 계약서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3의2.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가격 결정자료

제31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해당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1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것

5.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 이내에 신고할 것

제31조의5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법 제38조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8조제6항”을 각각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제4항 후단”을 “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136조 중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141조의11제1항제5호 중 “채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144조의3제6항제3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3조제2호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선박용품 등의 하역 등을 위한 승선의 경우 운송차량번호 포함)”으로 한다.

제18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192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으로 하고 “신청서”를 “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한다.

제23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란”을 “자료”란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으로,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를 “따른”으로 한다.

제237조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으로, “지식재산권을”을 “지식재산권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238조제2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2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242조의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을 “(지식재산권 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식재산권 등 침해”로, “지식재산권의”를 “지식재산권 등의”로, “지식재산권에”를 “지식재산권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를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자”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245조제1항제4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251조의2 및 제251조의3을 각각 제251조의3 및 제251조의4로 하고, 제2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전문 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및 마약탐지견 등을 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및 마약탐지견 등의 양성, 양성기관 설치·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4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5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254조제2항”을 각각 “법 제25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를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4조제4항”을 “법 제25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 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는 경우
2.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⑧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

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등

제261조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품”을 “수입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출입신고”를 “수입신고”로 한다.

제265조의 제목 “(무기 관리 의무)”를 “(무기등 관리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기의 안전한”을 “무기등의 안전한”으로, “무기의 사용”을 “무기등의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가”를 “무기등이”로 한다.

제274조의 제목 “(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을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개청시간”을 각각 “업무시간”으로 한다.

제275조의 제목 “(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을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청시간외”를 “업무시간외”로 한다.

제276조의2를 제276조의3으로 하고, 제2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6조의2(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 지정 등)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요건 및 구비서

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업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심사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보안상태, 교부 실태, 운영방법 등에 대해 수시로 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의 중단이나 시정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결여하게 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정책변화로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에 대행기관 지정요건 및 구비서류, 심의위원회 구성,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 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88조제7항 중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제222조제1항·제3항·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13항을 제9항에서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 제9항) 중 “지식재산권의”를 “지식재산권 등의”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지식재산권 등 보호업무”로 한다.

⑧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 과세자료명란 중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관세청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	---	--	-----	--------------------

별표 3의 비고 제2호 중 “미화 600달러”를 “미화 800달러”로 하고 제3호
 바목 괄호 중 “제60호”를 “제60호·제70호”로 한다.

별표 4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 품을 처분한 경우(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 작업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호 및 제3의2 호
--	--

별표 5의 제1호라목의 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1)부터 3)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1조제1항, 제
 258조, 제259조의6제1항제6호 및 별표 3 제6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
 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가격 결
 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3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1.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237조에 따른 <u>지식재산</u> 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 <u>지식재산</u> <u>권 등</u> ----- -----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가격신고) ① (생 략)	제15조(가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3. (생략)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
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
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
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
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1. --- 판매자와 구매자가 ---

2. 3. (현행과 같음)

③ -----

-----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신 설>

4. (생 략)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심사) ① ~ ⑤ (생 략)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
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
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 법 제30조제2항의 간접적

인 지급액에 대한 계약서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

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3의2.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23

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가격 결정자료

4. (현행과 같음)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

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

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해당 사전심사 또

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⑦ -----

-----.

1. ~ 3. (생략)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될 것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것

5.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 이내에 신고할 것

⑧ ~ ⑪ (생략)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 ~
⑤ (생략)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제32조의2(자율심사)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
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
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
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

제32조의2(자율심사) ① -----
----- 법 제38조제4항-----

-----.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
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
다.

② ~ ⑤ (생략)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3. (생략)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
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
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
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
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
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
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법 제38조제4항-----

2.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
조제5항-----

-----.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
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7
항-----

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
부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
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
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
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
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
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④ (생략)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
정) ①·② (생략)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
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
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

② 법 제38조제7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
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를」 제9조제5항에 따른 관세 환급금: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④ (생략)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

---제9조제6항-----

-----제5항 후단 --

--

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략)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생략)

② (생략)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1. ~ 4. (현행과 같음)

5. -----
----- 사업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2. (생 략)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u>징계처분</u>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생 략) ⑦ (생 략)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 · 국적 및 <u>생년월일</u> 3. (생 략)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 ⑧ (생 략) ⑨ <u>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7항</u>	1. · 2. (현행과 같음) 3. ----- ----- ----- ----- <u>징계처분</u> <u>(건축은 제외한다)</u>-----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생년월일(선박용품 등의 하역 등을 위한 승선의 경우 운송차량번호 포함)</u> 3. (현행과 같음)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관
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
율 등) ① -----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
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삭 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등)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② -----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등) ① -----

-- 자료”란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7조(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① -----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4. (생략)

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4. (생략)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 지식재산권 등을 -----

1. 지식재산권 등-----

2. 지식재산권 등-----

3. 4. (현행과 같음)

② 지식재산권 등-----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

1. (현행과 같음)

2. 지식재산권 등-----

3. 4. (현행과 같음)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

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 지식재산권 등 -----

----. ---- 지식재산권 등 ----

-----.

② -----

----- 지식재산권 등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
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
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②·③ (생략)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
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
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
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
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
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

----- 지식재산권 등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2조(지식재산권 등 침해 여부
의 확인 등) ①-----

----- 지식재산권
등 침해 -----

---- 지식재산권 등의 -----
---- 지식재산권 등에 -----

-----.

②----- 지식재산권 등의 권
리자-----

하는 물품의 화주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③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

-----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 -----

③지식재산권 등 -----

제245조(반입명령) ①-----

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u>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u> ② ~ ⑧ (생략) <u><신설></u> <u>제251조의2·제251조의3 (생략)</u>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 통관 등) ① <u>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u>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식재산권 등</u>----- ② ~ ⑧ (현행과 같음) <u>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 ①</u> <u>관세청장은 법 제246조에 따른</u> <u>물품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u> <u>기 위해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u> <u>전문 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u> <u>문인력”이라 한다) 및 마약탐지</u> <u>견 등을 양성할 수 있으며 이에</u> <u>필요한 양성기관을 설치·운영</u> <u>할 수 있다.</u> <u>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문</u> <u>인력 및 마약탐지견 등의 양성,</u> <u>양성기관 설치·운용 등을 위해</u> <u>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u> <u>다.</u> <u>제251조의3·제251조의4 (현행 제</u> <u>251조의2 및 제251조의3과 같</u> <u>음)</u>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 통관 등) ① <u>법 제254조제1항의</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u>
---	---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 5. (생략)

<신설>

<신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삭제>

2.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는 경우

2.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

② 법 제2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 5. (생략)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로 한다.

⑤ 법 제2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제259조의6(준수도측정·평가의

령에 위반하여 관세법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254조제3항-----
-----.

1. ~ 5.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54조제3항-----

-----.

⑥ 제5항-----

-----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

⑦ 법 제254조제5항-----

-----.

1. ~ 4.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9조의6(준수도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 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7.·8. (생략)

②·③ (생략)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 4. (생략)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나. (생략)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절차 및 활용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된 전자상거래업체등

7.·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
----- 수입물품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
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5. (생 략)

제265조(무기 관리 의무) ① 관세
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
방을 위하여 그 무기의 사용, 관
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
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
가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장
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
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
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
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
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
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

--- 수입신고-----

5. (현행과 같음)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 ① --
----- 무기
등의 안전한 -----
----- 무기등의 사용--

--.

② ----- 무기
등이 -----

---.

제274조(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
간) -----
---- 업무시간-----

-----.

1. ---- 업무시간 -----

-----.

· 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생략)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 취급) ①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 ④ (생략)

<신설>

--.

2. (현행과 같음)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 취급) ① -----

----- 업
무시간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6조의2(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 지정 등) ① 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통계·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업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심사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보안상태, 교부 실태, 운영방법 등에 대해 수시로 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의 중단이나 시정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결여하게 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76조의2 (생략)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⑥ (생략)

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보완하지 않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정 또는 개선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정책변화로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에 대행기관 지정요건 및 구비서류, 심의위원회 구성,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 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76조의3 (현행 제276조의2와 같음)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제222조제1항·제3항·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 설>

⑧ (생 략)

⑨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 제2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⑩ ~ ⑬ (생 략)

⑧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

----- 지식재산권 등의 -----

-- 지식재산권 등 보호업무 --

---.

⑪ ~ ⑭ (현행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